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1조).

장애인 근로자는 '반값월급'

전단지 배포하는 일을 하는 정신장애인이 A씨, 다른 직원들보다도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적은 급여를 받습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장애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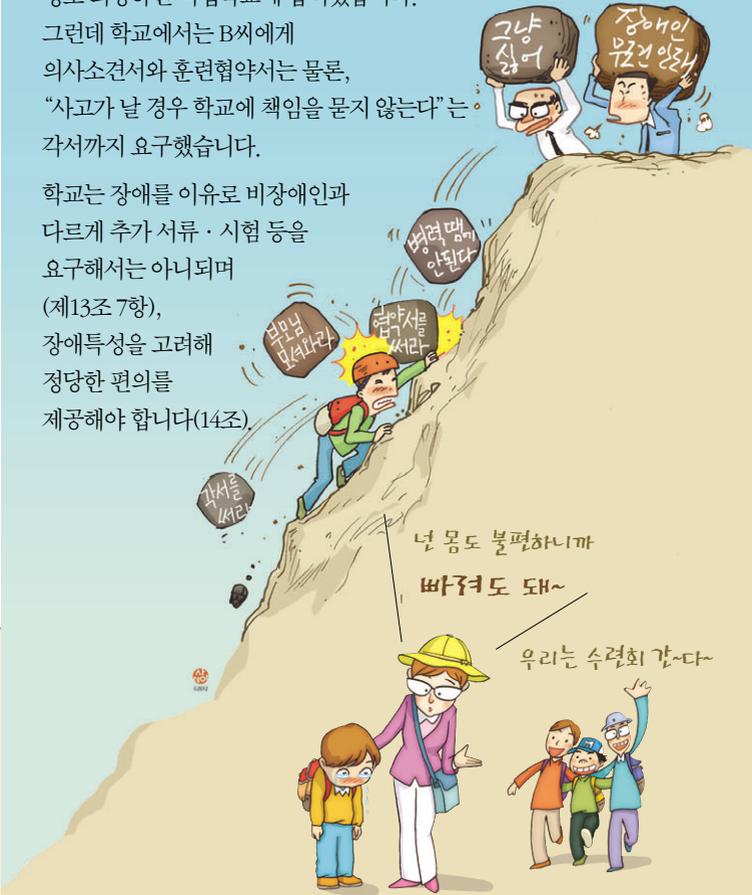
승강기, 높낮이조절책상, 큰모니터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만 제공한다면 장애인도 모두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전학 및 이를 위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제13조),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4조).

장애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학교

심장장애가 있는 B씨, 평소 희망하던 직업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B씨에게 의사소견서와 훈련협약서는 물론, "사고가 날 경우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요구했습니다.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다르게 추가 서류·시험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되며(제13조 7항), 장애특성을 고려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14조).



수련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

야외수련회를 앞두고 담임선생님은 정신장애가 있는 C군에게 "야외활동은 위험하니 집에서 쉬는 게 낫다"며,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육책임자는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되며(제13조 4항), 장애인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보조인력 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577-5364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사단법인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1577-5364 / 팩스 061-284-6332 / 530-8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 4층
 전자우편 15775364@cowalk.info / 홈페이지 http://www.drj.or.kr

본 안내서는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를 위해 제작하였으며,
 안내서의 내용은 전라남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 2015)

장·애·인·차·별·없·는·평·등·한·세·상

장애인차별, 알고 계십니까?



 **전라남도**
 JeollaNamdo

1577-5364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사단법인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2007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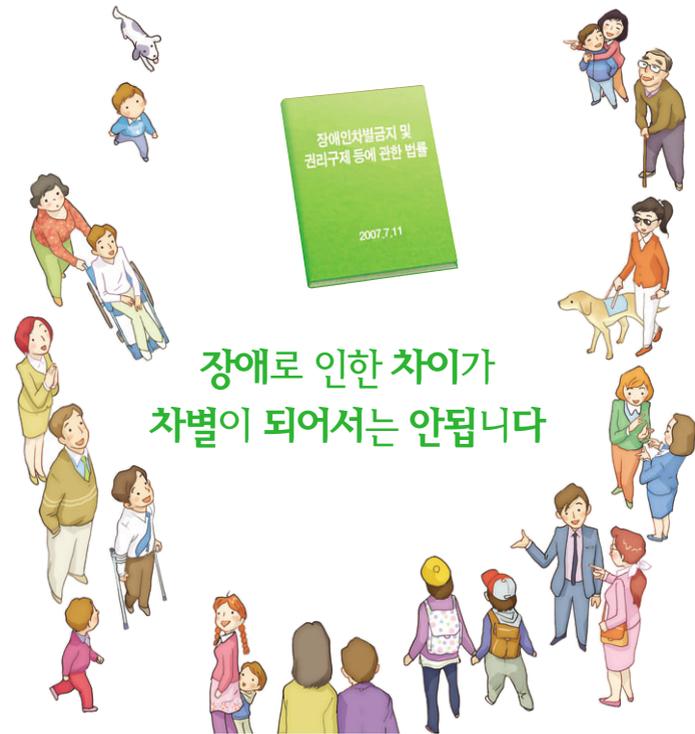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이행사항, 권리구제 절차,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네가지 유형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어떻게 이용하라고...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차별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17조).

중신보험,
장애인은 특약빼고
들어야합니다



그게 중신보험이나?
사망보험이지!

장애인은 특약 빼고 가입하세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 A씨는 자녀 명의의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회사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지적 장애인 B씨의 경우, 만약 보험틀기를 원한다면 특약 등을 빼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자에 대한 개별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청약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해야 합니다.

시설의 접근 및 이용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8조).

잠시만요~ 승강기 설치하고 가실게요~

뇌병변장애가 있는 A씨는 인근 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는 2층에 있는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도서관에 승강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서관은 “2층 건물에 무슨 승강기냐!”며, “예산이 없다”고 수년간 개선을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서관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소요되는 예산 역시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로 인한 차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던 B씨(지체장애), 위반차량을 볼 때마다 신고했지만 담당자는 “인력이 없다” “과태료라고 차주들이 안낸다”며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군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소홀 역시 장애인차별이며, 단속 전담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동 및 교통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교통수단: 철도, 도시철도,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
- 여객시설: 도로 및 부속물, 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장, 공항시설, 항만여객시설 및 항만친수시설
- 이동편의시설
 - ① 안내시설: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점자블럭 등
 - ② 내부시설: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승강기 등
 - ③ 기타시설: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해야.....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A씨, 매번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버스 번호를 물어봐야 하는데, 주변에 사람조차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도 장애 특성에 맞게 운행정보를 안내하라고 하는데, 어서 빨리 정류장마다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 설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공공기관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제20조),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제21조).

집에 가서 읽어달라고 해!

오랜 고생 끝에 내집을 갖게 된, 시각장애인 A씨. 주민센터에서 계약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들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한 묶음. 그런데 점자스티커조차 부착되어 있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요구한 정당한 편의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B씨는 진료내역을 알고자 점자로 된 진료기록부를 요청 하였으나 병원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점자, 큰문자, 음성 중 B씨가 요구한 대체자료를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 · 사법 · 참정권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식 제작 · 비치, 조력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안내 · 제공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26조).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행사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설비, 홍보 및 정보 전달,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27조).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찰

청각장애인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답변은 더욱 어려워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과 의사소통 ·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인약본(?)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선거에서 선거공보의 일부내용만 점자형선거공보로 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자로 제작하면 면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중앙선거위가 우편물 부피를 줄이고자 매수를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점자형선거공보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정보를 주는 것은 차별이며, 참정권 침해입니다.



정신적장애인 / 모 · 부 성권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아니되며 (제37조),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제28조).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 폭력, 이제 그만

섬에 사는 A씨,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지적장애인 B씨에게 농장, 염전, 양식 등 힘든 일을 30년 넘게 시켰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고 B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폐가나 다름없는 집에 살게 하면서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으며, B씨 앞으로 나오는 생계비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거액의 피해보상을 판결하였습니다.



부모가 되는 건 누구에게나 축복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C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D씨가 임신을 하자 강제로 낙태를 시키고 "지적장애인이 무슨 아이냐"며, 불임시술까지 강요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모 · 부성권을 침해한 차별로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임신 · 출산 · 양육 과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 · 부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